

2017년 6월 27일

## 뉴욕 시 노숙인 서비스부서(DHS) 보호소 시스템에서 장애인의 보호소 접근에 관한 집단소송 합의 제안 통지서

### 누가 이 통지서를 읽어야 합니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이 통지서를 읽어야 합니다.

- 장애가 있으며
- 뉴욕 시 노숙인 서비스부서(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의 보호소에 신청을 할 예정이거나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현재 DHS 보호소에 있는 경우

많은 종류의 장애가 이에 해당하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경우, 시청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기 힘든 경우 또는 집중, 기억, 의사결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이 통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015년 보호소 장애인들은 Butler v. City of New York 15-CV-3783 (RWS) (JLC)로 불리는 연방 집단소송건으로 DHS를 고소했습니다. 이는 집단 소송 사건으로써, 다수의 사람을 대변하여 제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양 당사자는 현재 해당 사건의 합의를 원하며 합의에 대해 판사의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DHS는 합의 과정에서 장애인이 보호소에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DHS는 또한 장애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부 규칙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 집단 구성원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다음의 경우라면 집단 구성원에 해당하며 본 합의를 통한 보장을 받습니다.

1. 미국 장애인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즉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그리고
2. • DHS 보호소 시스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 2012년 5월 14일 이후 DHS 보호소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거나 기타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는  
• 향후 DHS 보호소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

### 자세한 정보 확인 방법

합의 동의서는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장애인독립센터(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뉴욕 시, DHS의 웹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legal-aid.org](http://www.legal-aid.org), [www.cidny.org](http://www.cidny.org), 및 [www.nyc.gov/dhs](http://www.nyc.gov/dhs). 합의서 사본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우편, 이메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he Legal Aid Society  
Butler v. City of New York Settlement  
199 Water Street, 3<sup>rd</sup> floor  
New York, NY 10038  
[ButlerCase@legal-aid.org](mailto:ButlerCase@legal-aid.org)  
917-398-3055

###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DHS는 DHS 보호소 시스템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 1. 합리적 처우 요청

DHS는 집단 구성원에게 합리적 처우(RA)를 제공할 것입니다. RA는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 관행, 시설, 서비스에 대해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서비스 보조 동물,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침대, 약을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이용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됩니다.

DHS 는 RA 와 이를 신청서와 신호체계로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것입니다. RA 를 신청하는 경우 DHS 로부터 RA 요청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RA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이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더 나은 합리적 처우

DHS 는 RA 가 필요한 대상이 RA 를 신청을 안 한 경우에도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DHS 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DHS 시설 내 DHS 직원이 귀하가 필요로 하는 RA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DHS 는 최종결정을 내리는 동안 일시적 RA 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 3. 현재의 정책, 관행, 시설 관찰

DHS 는 현재의 정책, 관행, 시설을 관찰하여 이에 관해 장애인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입니다. DHS 는 보호소 시스템을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DHS 는 보호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이용할 것입니다. 시에서 합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획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 4. 직원 교육

DHS 는 직원들에게 장애인의 권리와 합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DHS 는 장애인이 보호소 시스템을 이용하고 RA 요청에 도움을 제공할 직원을 둘 것입니다.

### 합의에 동의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아니요. 합의에 동의하는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장애인이 보호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DHS 보호소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귀하 역시 합의에 귀속됩니다.

### 합의에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집단 구성원은 판사에게 합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은 해당 날짜 \_\_\_\_\_에 있을 공청회에 와서 직접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Judge Robert W. Sweet**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United States Courthouse 500 Pearl Street, Courtroom 18C**

**New York, NY 10007**

집단 구성원들은 또한 “Butler Class Action(Butler 집단소송)”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_\_\_\_\_일 이전 소인이 찍힌 서한을 상기 주소로 법원에 발송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The Legal Aid Society

Attn: Joshua Goldfein

199 Water Street

New York, New York 10038

Attorneys for the certified class

ButlerCase@legal-aid.org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본 소송에 해당되는 집단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상기 제시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전화하지 마십시오.